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492호/제2493호/제2494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18년 5월 31일

라. 회부일자 : 2018년 6월 11일

II. 개요

-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1,667억 5천만원에 대하여 1,774억 9천 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1,774억 4천만원이며, 미수납액 5천 5백만원은 전액 이월하였음.

- 세출예산현액 9,260억 8천 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33억 4백만원이며, 차인액 1,727억 8천 2백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3천 9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24억 4천 3백만원임.
-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216억 4천 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80억 1천 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2천 8백만원임.
- 재정투융자기금의 2017년도 수입·지출액은 7,276억 3백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2조 3,468억 1천 1백만원임.
- 감채기금의 2017년도 수입·지출액은 7,274억 6천 3백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1,784억 8백만원으로 전액 시금고에 예치되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7년도 수입·지출액은 113억 4천 5백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175억 4천 2백만원임.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2017년도 수입·지출액은 73억 9천 1백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56억 3천 8백만원으로 전액 시금고에 예치되었음.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2017년도 수입·지출액은 47억 9천 6백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28억 8천 2백만원으로 전액 시금고에 예치되었음.

- 지역개발기금의 2017년도 수입·지출액은 57억 2천 8백만원이며, 기본경비 지출 2백 5십만원을 제외한 연도말 조성액은 57억 2천 5백만원으로 전액 시금고예치 및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되었음.

III. 세입·세출 결산검토

1. 세입 결산

-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774억 9천 5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1,667억 5천만원 대비 106.4%인 1,774억 4천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음.
- 주요 세입 현황은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3억 8천 2백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등이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93억 1천 3백만원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지난연도수입, 기타잡수입 등임.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합쳐 모두 1,554억 8천 3백만원임.

- 보조금은 총 2억 6천 2백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임.
- 미수납액은 총 5천 5백만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그 외 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금 미납수입임.

2. 세출 결산

가. 총괄

-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275억 6천 1백만원으로, 예비비사용액 23억 8천 4백만원이 감액되고, 전년도이월액 9억 9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9,260억 8천 6백만원임.
-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1.3%인 7,533억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 3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8.6%에 해당하는 1,724억 4천 3백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 세출에 대한 항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7,461억 5천 2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7,437억 6천 6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천 9백만원, 20억 4천 8백만원은 집행잔액임.

-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93억 6천 7백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85억 8천 2백만원이며, 7억 8천 5백만원은 집행잔액임.
 - 예비비는 당초 1,740억 1천 6백만원에서 45억 4천 8백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세출예산현액 1,694억 6천 8백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임.
 - 기타 부문은 세출예산현액 11억원에 대해 지출액은 9억 5천 6백만원이며, 차인액 1억 4천 3백만원은 집행잔액임.
- 2017 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69억 2천만원으로, 예비비사용액 52억 7천 9백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216억 4천 1백만원임.
 -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1.3%인 180억 1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8.6%에 해당하는 36억 2천 8백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예산 이용 내역은 없음.
- 예산 전용은 총 3건 4천 4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280만원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5백만원
-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3천 6백만원

○ 예산 이체 내역은 총 5건 4억 6천 4백만원으로, 2017년 9월 21일 시행된 조직개편(시민참여예산과 신설)에 따른 사항임.

다.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 9천 5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구축 53만원
-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5천 6백만원

라.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 3억 3천 9백만원은 시정시책연구용역비로 긴급한 현안 수요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이 발주되었으나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한 5건의 연구용역비 미지급에 따른 사고이월액임.

마. 집행잔액

○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724억 4천 3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8.6%)이며, 사업별 주요 불용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정시책연구용역	8억 1,544만원
- 민간위탁제도 운영	1억 4,350만원
-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5,593만원
-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6,550만원
- 기관운영경비	4억 8,469만원
- 예비비	1,694억 6,808만원
- 기본경비(예산담당관)	1억 755만원
- 시민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5,758만원
- 지구촌나눔한마당	7,439만원
-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4,337만원
- 도시교류협력행사	8,026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5,698만원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관리	1억 3,794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2억 2,990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총 36억 2천 8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6.8%)임.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결산 총괄

- 2017 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당초 세입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667억 5천만원이었으며, 1,774억 9천 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74억 4천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음.
-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3억 8천 2백만원으로 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93억 1천 3백만원으로, 지난연도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등임.

2017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징수율(% (B/A)	미수납액 (C=A-B)
계	166,750,005	177,494,751	177,439,502	99.97	55,249
세 외 수 입	17,243,194	21,749,939	21,694,690	99.75	55,249
경상적세외수입	1,963,387	2,381,814	2,381,814	100	-
재산임대수입	1,910,524	2,223,753	2,223,753	100	-
사 용 료 수 입	52,863	157,947	157,947	100	-
이 자 수 입	-	114	114	100	-
임시적세외수입	15,279,807	19,368,125	19,312,876	99.71	55,249
기 타 수 입	15,279,807	19,367,784	19,312,535	99.71	-
지난연도수입	-	341	341	100	-
지 방 교 부 세	149,244,811	155,482,812	155,482,812	100	-
지 방 교 부 세	149,244,811	155,482,812	155,482,812	100	-
보 통 교 부 세	116,111,684	121,257,684	121,257,684	100	-
특 별 교 부 세	-	1,092,000	1,092,000	100	-
소방안전교부세	33,133,127	33,133,128	33,133,128	100	-
보 조 금	262,000	262,000	262,000	100	-
국고보조금등	262,000	262,000	262,000	100	-
자립선특별회계보조금	262,000	262,000	262,000	100	-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를 합쳐 모두 1,554억 8천 3백만원이며, 보조금은 총 2억 6천 2백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임.
- 미수납액은 총 5천 5백만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소송 비용 회수금 미납 수입임.

(2) 세출결산 총괄

-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260억 8천 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275억 6천 1백만원 보다 14억 7천 5백만원(0.15%) 감소하였음.
-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1.3%인 7,533억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 3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8.6%에 해당하는 1,724억 4천 3백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 2017 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69억 2천만원으로, 예비비사용액 52억 7천 9백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216억 4천 1백만원임.
- 이 중 예산현액 대비 81.3%인 180억 1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8.6%에 해당하는 36억 2천 8백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나. 세입결산 검토의견

-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774억 9천 5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1,667억 5천만원 대비 106.4%인 1,774억 4천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음.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100%에 가까워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2017 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과 비교해 약 106억 8천 9백만원 가량 실제 수납액이 증가하였음.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7년	166,750	166,750	177,495	177,440	55	-	55	99.96%
2016년	139,937	139,937	146,703	146,652	54	-	54	99.96%
2015년	186,054	186,054	141,904	141,891	13	-	13	99.99%

-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시유평특히 실시료 정산시에 실제매출액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추가수입이 발생했고, 서울 글로벌센터빌딩 입주 기구 증가로 인한 임대료 초과수입, 국제회의장 대관에 따른 기타사용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특히, 지난 해 7월 시 추경예산 편성이후 정부 추경에 따라 보통교부세 추경분(51억 4천 6백만원)이 세입조치되었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정산 환급금 및 지난년도(2011년도~2014년도) 미납액에 대한 배분액 수입 증가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보다 107억 4천 5백만원 증가하였음.
- 이 밖에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6년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위탁사무의 정산액 반납,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국가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 소송비용 회수금, 지역상생교류 사업단 민간위탁사무 정산 반납금, 대행사업비 정산잔액 등에서 일부가 징수결정 되었음.

미반영 세입예산의 징수 결정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발 생 사 유
기획	그외수입	4,228	4,228	○ 2016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 정산반납액
평가	그외수입	561	561	○ 2016년 연가사용일수 초과사용 반납

	특별교부세	1,092,000	1,092,000	○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법률	그외수입	417,302	362,053	○ 국가하천 소송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정산액 및 환급금
대외	기타이자수입	95	95	○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정산 이자반납
	그외수입	9,927	9,927	○ 지역상생교류사업단 민간위탁사무 정산 반납
해외	기타이자수입	18	18	○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제외수입 예산 미편성
	그외수입	188,407	189,407	○ 대행사업비 정산잔액 등 제외수입 예산 미편성
	지난연도수입	341	341	○ 16년도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사용료 수입 중 17년도 수납된 내역

-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임시적 제외수입의 경우를 예외로 하더라도 사용료 등의 정상적 제외수입은 매 회계연도에 계속적으로 발생해 상대적으로 예측이 수월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세입예산 책정이 필요함.
- 기획조정실(법률지원담당관)은 2017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던 국가하천 소송비용 정산액과 각종 승소한 소송비용 회수금 등 3억 6천 2백만원의 기타수입을 세입조치하였음.
- 우선, 사유지가 국가 및 지방 하천에 편입된 경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그간 국가를 대신해 시가 부담해온 불합리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지급받기로 결정하고 2017년에 모두 46건에 1억 9천 4백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음.

- 또한, 각종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발생한 소송비용 회수금도 세입처리 하였으나, 이 가운데 일부인 5천 5백만원이 납부대상자의 납부지연에 따라 미수납 이월되었음.
- 상대적으로 소액이긴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 등이 즉각 적으로 회수 되도록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임.
- 국가하천 소송비용의 정부 보상과 각종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세입예산이 미수납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과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함.

다. 세출결산 검토의견

-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260억 8천 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275억 6천 1백만원 보다 14억 7천 5백만원(0.15%) 감소 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81.3%인 7,533억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 3천

9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8.6%인 1,724억 4천 3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2017년 회계연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이 약 237억원 증가했으며 예비비가 1,467억원 가량 증가하면서 예산현액 기준으로 약 1,309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했음.
- 다만, 실제 예산집행액은 7,533억 4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되었음.
- 매년 예산의 불용규모가 감소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 효율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예산 확정 후 각종 세목변경과 같은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의 이용보다 다소 절차나 과정이 간단한 예산 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집행부서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과 같은 사정 변경을 최소화해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 운영이라는 합리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세출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사업 변경	세목 변경						
2017	927,561	909	△2,384	0	95	44	0	926,086	753,304	339	172,443 (18.6%)
2016	923,110	1,288	△129,230	40	8	102	0	795,168	766,029	909	28,229 (3.6%)
2015	482,958	776	△97,537	0	684	659	0	386,197	317,347	1,288	67,562 (17.5%)

-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7년도 예산집행률은 전년도 96%에서 81%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졌으나, 이는 전년도 대비 급증한 예비비의 집행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각 사업별 예산 집행률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
-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추경예산 편성 시기를 앞당기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1) 이용, 전용, 이체 및 사업변경

-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장·관·항 사이의 상호 이용을 금하고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예산총칙에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비롯해 몇 가지 이용사유를 적시해 예산심의를 받고, 이를 근거로 예산이용을 시행하고 있음.
- 기획조정실의 경우 최근 5년간 예산의 이용내역을 발생시키지 않고 의회가 심의·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서울시가 예산총칙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이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의회의 예산심의를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에도 예산의 이용을 최대한 억제해 예산운용의 민주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총 3건에 4천 4백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 중 웹툰·동영상 공모전 시상금 지급과 시민참여예산과 신설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지급사유 발생,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사업 중 국제행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 등에서 예산항목을 변경한 것임.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의 경우 특히, 동일한 정책사업내라 할지라도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그 필요성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당초 의회의 예산의결 취지에 적합하게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 밖에도 2017년 9월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참여예산과가 신설됨에 따라 당초 재정관리담당관 소관이던 업무가 시민참여예산과로 소관이 변경되어 사무관리비를 포함해 모두 5건에 4억 6천 4백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으며, ‘서울의 미래 3편’ 책자 발행 등을 포함해 총 2건의 사업에 9천 5백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음.
-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여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 전용, 사업변경 등은 당초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달리 집행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생을 최소화해 예산편성과 의결, 집행권을 분리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다음연도 이월사업

- 2017년에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에서 3억 3천 9백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기획조정실 소관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사 고 이 월	시정시책 연구용역	2,506,600	1,351,912	339,251	815,436

- 시정시책 연구용역 사업은 시정에 필요한 각종 주요 연구용역 가운데 시급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 연구용역비로 매년 편성해 운영하고 있음.
- 특히, 본 사업의 경우 발주시기 지연과 하반기 집중 발주에 따른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거의 매년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 예산의 편성부서와 실제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서가 다르고, 정확한 사업 규모나 연구용역 준공시기 등을 예측하기 곤란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편성 방식의 변화를 포함해 사업구조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별다른 개선노력이 없음.
- 결국 현재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예산이월이나 사업의 불명확성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음.
- 사업 추진의 용이성을 포함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이후의

사업계획 변경을 비롯한 각종 사유에 따른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전절차 이행기간이나 공정률을 충분히 감안한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명시이월 등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사업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됨.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현액	926,086	795,168	386,197
불용액(비율)	172,443(18.6%)	28,229(3.6%)	67,561(17.5%)

-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들은 불용율이 과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임.
- 기획조정실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만약에 발생할지 모름

특별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불용규모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착시를 보이기도 함.

- 이 밖에, 예산대비 상당한 비율의 예산 불용을 기록하고 있는 민간 위탁제도 운영,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 제공, 시민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제 운영, 도시교류 협력행사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불용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자료로 활용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2017년도 주요 불용 사업 및 사유(불용률 20%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		
				집행 잔액	불용률(%)	불용액 발생사유
조 직	시정시책연구 용역	2,507	1,352	816	32.5	시정시책연구용역비는 포괄연구용역비로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수요에 대응하여 용역 주관부서에 (재)배정하는 예산으로 미배정액(754백만원) 및 낙찰차액(62 백만원) 발생
조 직	민간위탁제도 운영	714	-	145	20.3%	'민간위탁사무 통합 회계감사 용역' 및 '회계 기준 수립용역' 낙찰차액 발생 (110백만원) 등
대 외	지역 생활 권 발전 협의 체 지원(인력 운영비포함)	132	71	61	46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추진 보류
예 산	예산절약성과 금제 운영	150	85	65	43.3%	예산 편성 후 대상사업 접수, 실무검토, 위원회 심의 등으로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되어 불용액이 발생함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비용		
				집행 잔액	비용률(%)	비용액 발생사유
예 산	기본경비	268	160	108	40.3%	기본경비 268백만원 중, 131백만원은 조직신설 등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편성한 기관·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임 131백만원 중 23백만원이 지출되어 비용액 발생됨
재 정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50	0	50	100	사업계획 재검토 후 미추진('16 회계연도 결산안 시기가 '18년도 예산안 발표시기와 겹치고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재정포털에서도 공시되고 있어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미추진 결정)
시 민	시민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제 운영	75	17	58	77.8	시민예산성과금지급사유미발생
국 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선정	39	29	10	26.7%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집행 잔액
국 제	국내개최 국제 행사 지원	100	57	43	43.4%	실국에서 민간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포괄예산으로 상반기 대통령선거로 지원실적 저조
국 제	도시교류 협력행사	220	140	80	36.5%	중국 베이징측 사정으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미개최
해 외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행	263	206	57	21.7%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의 사업 수주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초청 워크숍 개최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해외도시 포럼 개최시 외부 자원 활용하여 비용 절감함으로써 비용액 발생

- 특히, 비용률이 높은 일부 사업가운데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시 재정 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기본경비(예산담당관) 등의 사업은 예산 미집행에 따른 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들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 시의 각 실·국·본부에서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각종 국제행사나

회의를 적극지원해 국제교류증진에 기여하고 시 주요정책 홍보 등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2004년 시 방침에 따라 최초로 시행한 이후 2016년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약 10건 내외의 각종 국제 행사나 회의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음.
- 예산의 규모가 연간 1억원 내외로 크지 않음에도 2017년에는 사업비의 전용과 변경사용이 모두 발생하였음.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전용	변경사용			
100,000	36,000	56,000	100,000	56,629	43,371

- 당초 편성된 예산 가운데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가운데 행사운영비로 3천 6백만원을 전용하고, 5천 6백만원은 외빈초청여비로 변경사용 하였음.
- 비교적 작은 사업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복잡한 예산의 변경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지출된 사업비는 5천 7백만원에 불과하며 당초

예산액의 약 43%는 불용처리 하였음.

- 해당 부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해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제행사 개최가 줄었고, 관광정책과에 MICE 산업 증진을 위한 유사 사업이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이와 차별을 위해 일부 예산을 변경했다고 해명하고 있음.
- 비교적 오랜 사업 추진 이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나 성격을 감안할 때 예산의 변경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시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과의 차별성을 살피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각 부서가 민간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나 회의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내에 관련 예산을 포괄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5) 시민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제 운영

- 본 사업은 예산낭비 등을 신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과거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함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으나 2016년 이후 대상을 구분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지급대상이 구분된 2016년 이전에도 예산성과금의 주 수혜대상자는 공무원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물론 최근 3년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성과금 지급 실적을 보면 연간 10여건 미만의 신고에 대해 1천만원 수준에서 성과금이 지급되고 있음.

시민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

연 도	실 적
2015년도	예산절약성과금 : 3건, 4,532천원 사례금 : 9건, 900천원
2016년도	예산성과금 : 8건 1,900천원 시정참여 : 133건, 3,550천원
2017년도	예산성과금 : 12건 5,968천원 시정참여 : 32건 3,200천원

- 예산절감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1개 사업별로 최고 1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예산성과금보다는 간단한 시정참여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건당 10만원 가량의 보상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 2017년에도 당초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성과금 지급 사유 감소로 5백만원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로 전용

하였으며, 예산현액 7천 5백만원 가운데 1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당초 예산의 약 72%를 불용처리 하였음.

- 더욱이 시민들의 관심제고와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위원회 개최 비용 등을 위해 매년 1천만원 가까운 사무관리비를 편성해 지출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예산집행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음.
-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규모가 크지 않지만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점 등을 살펴 시민예산성과금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6) 해외도시 협력 사업의 재구조화 노력

- 시는 국제기구 유치와 교류협력과 시가 추진하는 우수한 정책의 해외 공유 및 진출을 위해 기획조정실내에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설치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불용과다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017년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263	57	21.7%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984	230	23.4%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67	13	19.4%
2016년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1,213	611	50.4%
	국제 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1,153	439	38.0%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102	514	46.6%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104	52	49.7%
2015년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1,168	426	36.5%
	국제 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886	267	30.1%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위수탁	2,117	312	14.8%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설립운영	300	207	69.0%

-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이 담당하는 개별사업은 대략 연간 7~8개 내외에 불과한데도 매년 담당관 전체 사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3~4개 사업의 예산의 불용률이 15%에서 70%까지 나타나고 있음.
- 매년 사업추진실적이거나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해 예산 전체 규모를 조금씩 감액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상황은 수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의 사업은 최근 우수 정책의 해외진출에 포커스가 맞추어서 추진되고 있고, 이런 사업의 속성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른 여타 사업에 비해 크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됨.

- 다만, 순수하게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당한 비율의 예산 불용이 동일한 사업에서 몇 년 째 지속되고 있다면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당초 예산규모를 줄이거나 활발한 예산변경 행위를 통해 예산 집행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무엇보다 상대국가 혹은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교감을 비롯한 준비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시에서 추진 중인 유사사업 혹은 타 기관의 유사활동과의 연계성 강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7)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립대학교는 대학회계를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시는 시립대학교에 공립대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17년도 시로부터 지원받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규모는 735억 6천 7백만원이며, 지난 연도 이월액¹⁾ 57억 3천 2백만원을 포함한 792억 9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음.

1) 2016년 100주년 기념시민문화 교육관 건립과 평생교육원 운영 예산 가운데 공사비 일부와 정보시스템 기반환경 구축비용 일부가 2017년도로 사고이월되었음.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예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업 변경	세목 변경	전용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7년	73,566		0		150	327	106	79,298	48,807	27,333	3,157 (3.98%)
2016년	47,623		0		481	42		47,623	38,907	5,732	3,035 (6.4%)
2015년	40,463		16		21	93		43,748	40,658		3,090 (7.1%)

□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

- 2017회계연도 시립대 소관 예산의 이용은 3건에 3억 3천 7백만원임.

서울시립대학교 예산 이용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 과 목	예산액	이용 내역		사 유
			증	감	
합 계		2,226,679	336,560	336,560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임차료	0	10,010		- 참여 회원교 공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 계획에 따라 변경 클라우드 이용료 및 공유대학 사업관리 용역비 확보
	전산운영 용역비	0	220,000		
	전산장비 취득비	2,016,769		230,010	
세운상가 공간활용	전산장비 취득비	35,410		19,250	- 세운상가 공간 구축계획을 일반강 의실에서 로봇테크샵 공간 조성으 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공사비 발생
	시설비	0	19,250		

직장 어린이집 설치	부대경비	157,500		87,300	-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영유아 시설 보안을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검사 및 평가인증 대비 의뢰비용 등 확보
	그 밖의 용역비	17,000	87,300		

- 시립대학교의 경우 예산이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 예산 변경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2017회계연도 시립대 소관 예산의 전용은 총 2개 사업에서 3건으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세운상가 공간활용 사업에서 이루어졌으며 전용규모는 총 3억 2천 7백만원임.
- 전용 사유로는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공유대학 참여학교가 공동으로 운영가능한 시스템 s/w 구매와 각종 강좌 콘텐츠 제공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각각 2억 4천 3백만원과 7천 4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또, 세운상가 공간활용 사업 중 로봇 장비의 유기적 제어와 활용에 필요한 s/w 구매를 위해 1천만원을 실험실습 기자재 항목에서 교육소프트웨어 취득비 항목으로 전용하였음.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3,017,219	327,055	327,055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취득비	2,016,769		243,390	공유대학 공동 운영가능한 s/w 구매
	교육소프트웨어 취득비	482,900	243,390		
	전산개발비	500,000		73,665	모바일 서비스 확대 필요에 따른 개발
	지급수수료 등	0	4,120		
	전산장비 임차료	0	69,545		
세운상가 공간활용	실험실습 기자재	17,550		10,000	로봇장비 제어용 s/w 구매
	교육소프트웨어 취득비	0	10,000		

- 예산의 전용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당장 지출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옮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예산 전체 불용 가능성을
 줄이려는 시립대의 전용 사용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산 전용의 남용
 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과는 다르게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어,
 가능한 당초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밖에도 2017년 시립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강사료 지급, 세운상가 공간활용, 재무행정 및 행정장비 구매와 교육지원 환경개선 등에서 모두 5차례 예산변경을 시행하였음.
-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잦은 변경사용은 예산편성과정의 소홀이라는 책임을 희석하는 것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사고이월

- 2017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사고이월은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과 기숙사 증축공사, 새 100년 발전방안 컨설팅 등에서 모두 5건 262억 7천 7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시립대는 2018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시민대학 공간,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민문화교육관(지하 3층, 지상6층, 연면적 20,782㎡)을 건립 중임.

서울시립대 사고이월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사유
계		51,098,438	18,706,682	26,277,068	476,726	
교육지원 환경개선	시설비	4,208,477	3,881,731	284,398	42,348	동절기 한파에 의한 습식공사 지연
100주년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시설비	34,037,961	9,833,551	18,539,077	27,371	건축공사 공기연장, 건설폐기물용역업체 선정지연 및 암수량 증가
	감리비	1,560,000	764,072	769,406	26,522	
기숙사 증축공사	시설비	6,908,000	1,237,113	5,669,480	1,407	지하지장물, 환경영향평가 반영으로 공기지연
	감리비	584,000	297,334	286,666	0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유형자산 취득비	3,600,000	2,678,631	566,041	355,328	사전절차 지연
	학교운영비	216,000	185,000	-	31,000	
새 100년 발전방안 컨설팅	용역비	200,000	14,250	162,000	23,750	완성도 제고를 위해 용역기간 연장

- 201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8년 7월 완공예정인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 489억원 중 2017회계연도에는 당초 사업비로 3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56억 3천 8백만원이 지난 해 사고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56억 3천 8백만원임.
- 시립대는 이 가운데 160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대비 54.2%에 해당하는 193억 9백만원을 재차 사고이월 하였음.
- 사고이월의 주요 원인과 관련해 시립대는 건설폐기물 용역업체 선정

지연이나 암반 수량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시립대는 지난 2016년에도 암반 수량 증가로 건축공사가 지연되면서 당해 건설사업비의 56% 가량을 이월한 바 있으며, 2017년도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이월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 할 수 없음.
- 사업구역내의 암반 수량 문제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고, 폐기물 용역 업체 선정 지연의 문제도 면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사전에 대비가 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짐.
- 각종 공사 지연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당해 사업비를 축소하고 다음 연도에 적절한 규모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또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수업의 질적 수준 제고와 실무 적응 능력 배양, 교육 내실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첨단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유형자산취득비와 학교운영비를 포함해 38억 1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5억 6천 6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

3억 8천 6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우수한 교육과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성능과 수요를 주된 수요자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발주·구입해 수업이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음.
- 납품 품목의 시세변동이나 물품 수급, 납품 기자재의 상태 불량으로 인한 납품 지연, 능력없는 업체 선정으로 인한 재공고 등 시립대가 제시하는 상당수의 이월 사유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와 시장조사를 통해 극복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의 이월은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동일한 사유로 사고 이월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주의가 필요함.
- 아울러, 시립대학교 지원금을 편성하는 기획조정실이 법적 권한 범위에서 사고이월 등의 사유를 충분히 살펴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됨.

□ 집행잔액 발생(예산의 불용)

- 2017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출예산(시 지원금)의 집행잔액은 총 31억 5천 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92억 9천 8백만원 대비 약 4% 수준임.
- 매년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약 4%가 불용된 것은 서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률(2.3%)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17회계연도 시립대학교 불용률 과다발생 사업 내역(15% 이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	집행잔액 사유
세운상가 공간활용	70	38	2	45.3%	- 기본공사 완료 후, 여러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경과(관리부서 재지정 등)
강사료 지급	4,593	3,807	786	17.1%	- 외래강사 강의시간 감소
새 100년 발전방안 컨설팅	300	235	65	21.7%	- 보다 완성도 높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기간 연장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300	92	207	69.1%	- 재능기부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홈페이지 개선 용역업체 선정 무산에 따른 미집행
평생교육원 운영	345	277	67	19.7%	- 계획대비 실제 운영규모의 축소로 집행잔액 발생 및 인터넷증명발급 시스템 구축 지연
해외유수행정 대학원서울시정 사례연구지원	286	228	57	20.2%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에 따른 프로그램 참가자 감소
기관 기본경비	1,049	822	227	21.64%	-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예산절감 및 예산운영상 집행잔액

-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 사례 연구지원의 경우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외부 요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고, 기관 운영경비는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등 예산절감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세운상가 공간활용 사업의 경우 내부 사업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경과가 주된 사유이며, 평생교육원 운영의 경우 실제운영 규모 축소로 예산현액 대비 19.7%의 예산이 불용되었음.
- 한편, 시립대의 전임교원 강의비율 제고에 따라 매년 강사료 지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매년 상당한 금액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로 평가되며 시립대 정책 변화에 맞는 적절한 예산수립과 면밀한 집행 노력이 요구됨.

시립대학교 강사료 지급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2014	강사료 지급	5,080	3,950		1,130	22.2%
2015	강사료 지급	4,949	4,107		842	17.0%
2016	강사료 지급	4,932	3,945		873	17.7%
2017	강사료 지급	4,594	3,808		786	17.1%

- 무엇보다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이나 평생교육원 운영, 강사료 지급 등의 사업은 매년 과도한 예산이 미집행 불용처리되고 있음.
- 예산집행을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예산이 매년 상당부분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지속필요성이나 예산편성 규모의 적절성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함.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사업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사업은 개교 100주년을 맞은 시립대가 과거 지식전달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역량함양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 201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음.
- 해당 건물은 지하3층 지상 6층, 연면적 20,782 m^2 규모로 신축중에 있으며, 교육공간과 연구·창업공간은 물론이고 전체 연면적의 약 10% 수준인 2,098 m^2 를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489억원으로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사업비를 나누어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음.

- 시립대 내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그 상징성도 대단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 3년간 매년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하는 등 예산집행과 관련한 일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단위: 천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2017	시설비	34,037,961	9,833,551	18,539,077	27,371
	감리비	1,560,000	764,072	769,406	26,522
2016	시설비	9,400,000	3,761,994	5,637,961	45
2015	시설비	1,950,000	645,697	1,278,525	25,778

- 사업의 최초 추진단계에서부터 설계용역 준공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기 시작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2016년과 2017년에는 해당 지반 암수량 발생 등에 따라 연간 책정된 공사비의 50% 이상을 이월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음.
- 예산편성과 의회 의결과정에서 시립대학교의 오랜숙원 사업으로 사업 추진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투자심사를 비롯한 여러 사전 절차가 있었음에도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비효율은 철저한 사업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음.

- 이런 비효율의 주된 책임은 시립대에 있지만, 대학회계가 분리된 이후 시 지원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도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되며, 해당 사업 이외에 시 지원금 예산 전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새 100년 발전방안 컨설팅

- 시립대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학교 진단 및 평가를 통한 미래 100년의 발전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의 비전이 되는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 컨설팅 용역을 계획하였음.
- 2017년도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새롭게 편성된 3억원의 예산 가운데 시립대학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업체(주식회사 레이즈지엘에스 컨소시엄)와 1억 6천 2백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음.
- 당초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설정한 시립대는 연구과정에서 보다 완성도 높은 연구용역 결과물 산출을 이유로 연구용역비 1억 6천 2백만원 전액을 사고이월 하였음.

- 하지만, 최초 연구용역 계약이 2017년 12월에 체결되었고 준공 시기를 다음 해 4월로 설정한 점을 볼 때, 연구용역 준공 지연과 관계없이 해당 연구용역비의 이월 행위는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대해 이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

③ 국립대학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연구용역의 발주시기에 이미 예산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 하고도 이를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예산집행

행위라 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시립대는 당초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컨설팅 용역비로 의결받은 3억원의 예산 가운데 1억원을 컨설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홍보비로 편성해 집행하였음.
- 비록 대학회계의 자율성이 관련법에 따라 부여되고 있고, 시 지원금 예산이 개별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진출되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가 의결한 범위에서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해 시립대는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3억원에는 처음부터 100주년 기념 엠블렘 제작 및 UI 제작을 위한 홍보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실제 의회 예산확정 이후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서에는 이를 구분해 표기하고 있음.
- 하지만, 시립대에는 이미 대학홍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2017년 약 7억 1천 5백만원 가량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립대의 설명과 같이 1억원을 홍보비로 활용할 목적이었다면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컨설팅 비용과 홍보비를 구분해 의결 받았어야 함.
- 시립대가 대학회계의 독립성을 이유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각종 예산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

예산심사권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됨.

- 무엇보다 시립대학교 지원금을 편성하고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획조정실은 시립대학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살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IV.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

- 「도시개발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설치·운영됨.
- 현재 시는 도시개발의 세입(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과 세출(도시계획사업 추진 각 부서)의 관리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음.
- 시의 예산담당관은 예상치 못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와 타회계 전출금을 관리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는 당초예산 26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역고가공원 추가공사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예비비 52억 7천 9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 회계 전출금을 지출하는 등 180억 1천 3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6억 2천 8백만원은 집행잔액임.

V. 예비비 지출 승인

- 법률지원담당관은 2017년 12월 12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부족에 따라 21억 6천 4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하였음.
- 해당 사건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 정착지의 도로, 급수시설을 포함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4건의 소송에서 시가 일부패소 함에 따라 관련 판결금을 지급한 것임.
- 당초 시는 8억 5천만원의 배상금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각종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 예산이 소진되어 부족한 판결금 21억 6천 4백 만원을 예산담당관의 승인을 거쳐 12월 29일 최종적으로 예비 비에서 지출하였음.

- 법원의 판단에 따른 배상금은 그 규모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예비비의 사용요건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소송결과에 따른 예산집행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송관련 배상금 규모의 정확한 산정을 기해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VI. 기획조정실소관 기금 결산

- 기획조정실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국제협력계정), 지역개발기금 등 5개 기금(6개 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2017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B)	
		계(B)=(C-D)	조성액(C)	지출액(D)		
재정투융자기금	2,576,007	△229,197	131,880	361,077	2,346,811	
감채기금기금	305,016	△126,608	422,447	549,055	178,408	
남북교류협력기금	19,171	△1,629	317	1,947	17,542	
대외협력 기금	국내협력 계정	4,809	829	2,620	1,791	5,638
	국제협력 계정	2,724	158	2,073	1,914	2,882
지역개발기금	-	5,725	5,728	3	5,725	

1. 재정투융자기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재정투융자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사 및 기금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중임.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예수금,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일시적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자원 부족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 용자 자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1) 기금 현황

- 2017년도말 조성액은 2조 3,468억 1천 1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조성액 2조 5,760억 7백만원보다 2,291억 9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타 회계 예수원리금 상환 및 용자에 의한 것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 + (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재정투융자기금	2,576,007	△229,197	131,880	361,077	2,346,811

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2017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 입	합 계	656,695	727,603	
	예 수 금 수 입	20,900	20,900	·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
	예 탁 금 상 환	440,192	496,176	· 특별회계 및 기금에 예탁한 재원의 회수
	이 자 수 입	21,022	26,580	· 예탁금이자, 시금고예치금이자
	융 자 금 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75,034	84,400	· 서울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등 산하기관 융자금회수
	예 치 금 회 수	99,547	99,548	· 전년도 이월금
지 출	합 계	656,695	727,603	
	예 탁 금	80,000	80,000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탁
	예 수 원 리 금 상 환 (이 자 포 함)	274,687	274,584	· 기 예수된 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
	융 자 금	30,500	86,493	· 서울에너지공사 융자
	기 금 관 리 비	2	0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예 치 금	271,506	286,527	· 다음연도 이월금

- 2017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액은 각각 7,276억 3백만원임.
 -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자포함) 844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4,961억 7천 6백만원, 예탁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265억 8천만원, 예수금 수입 209억원, 예치금 회수금 995억 4천 8백만원임.
 - 수입은 금리하락 등 이자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사 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계획현액 대비 10.8% 증가하였음.
 - 지출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를 위한 예탁금 800억원, 기 예수된 기금과 특별회계 예수재원 상환 등 예수금원리금상환 2,745억 8천 4백만원, 서울에너지공사 신규융자 864억 9천 3백만원, 시금고 예치금 2,865억 2천 7백만원 등임.

나.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 2017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차례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당초 수입·지출 규모를 당초 8,058억 2천 3백만원에서 6,566억 9천 5백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최종 결산금액은 7,276억 3백만원임.
- 결국, 전체 운용규모는 1,491억 2천 8백만원이 당초 계획 대비 감소해 18.5%의 변경을 보였음.

- 주된 변경 사유는 수입 가운데 주택사업 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계정) 예수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국민주택계정)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각각 1,021억과 320억 감소했고, 서울교통공사 용자금 회수 수입도 174억 감소하였기 때문임.
- 지출 부문에서는 지난 해 6월 서울에너지공사에 255억원을 새롭게 용자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예탁금도 당초보다 400억원 감소하였으며, 예수금 수입 감소에 따라 예치금의 규모도 1,370억원 감소하였음.
- 2015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기금변경의 규모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변경해 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도록 했음.
- 하나의 목적사업으로 이루어진 재정투융자기금의 특성상 지출규모 전체의 20%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예탁금이나 예치금과 같은 지출 각 항목의 주요한 변경은 지방의회의 의결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개정된 관련법령의 취지는 기금 운용에 있어 과거보다 집행부의 자율성은 축소하고 지방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기금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에 따라 새로운 경비의 지출 등 주요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 혹은 보고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2017년도말을 기준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은 2조 4,924억 7천만원의 자산에 1조 1,494억 1천 9백만원의 부채를 갖고 있어 자산에서 각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예수금인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규모는 1조 3,430억 5천 1백만원임.
- 순자산은 2016년과 비교해 예수금에 대한 이자지출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 약 150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017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주요내역
자 산	2,492,470	
투자자산	2,205,943	
예탁금	2,060,284	기금(596,700), 특별회계(1,463,584)
융자금	145,659	서울교통공사(69,600), 서울에너지공사(76,059)
현금예치금	286,527	시금고에 정기·공공예금으로 예치중
부채와 순자산	2,492,470	
부 채	1,149,419	
예수금	1,149,419	기금(322,497), 특별회계(826,922)
순자산	1,343,051	순자산 = 자산총계 - 부채

- 재정투융자기금은 그 속성상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설치한 각 기금이 출연금 부족과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자체수입구조 부족으로 매년 기금의 운용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재정투융자 기금에 대한 의존성이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한편으로는 기금의 안정성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 누수없는 여유자금의 예수 등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시금고 예치금은 최근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날이 갈수록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고려해 법의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고려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함.
- 아울러, 통합기금 성격의 재정투융자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현재 시가 운용중인 각종 기금의 건전성과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각종 기금의 통합·폐지 등 재구조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 특히, 재정투융자기금은 운용 규모면에서 시 전체 기금 규모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크고, 또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최근에는 시 산하 투자기관에 대한 융자규모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기금임.

- 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건전성과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기금 운용이 요구됨.

2. 감채기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중임.
- 감채기금의 주요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금, 국고보조금 운영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각종 지방채의 상환이나 공사·공단에 대한 출자보조 및 기금차입금 상환 등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함.

1) 기금현황

- 2017년도말 감채기금의 조성액은 1,784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050억 1천 6백만원 대비 1,266억 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감채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 + (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감채기금	305,015,604	△126,607,997	422,447,203	549,055,199	178,407,607

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 2017년도 감채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 수입은 7,274억 6천 3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3,050억 1천 6백만원, 타회계 전입금 4,176억 3천만원,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48억 1천 7백만원 등임.
- 지출은 총 7,274억 6천 3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100억 3천만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3,390억원, 신용평가 수수료 등 기본경비 2천 5백만원, 예치금 1,784억 8백만원 등임.

2017년도 감채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 입	합 계	722,701	727,463	
	공공예금이자수입	14	4,817	· 감채기금 운용에 따른 은행이자수입등
	기타회계전입금	417,630	417,630	·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교통정책과 전입금
	예치금회수	305,057	305,016	· 전년도 이월금
지 출	합 계	722,701	727,463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	210,030	210,030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기타회계전출금	339,000	339,000	·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위한 도시철도건설 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기본경비	50	25	· 국제신용평가 수수료 등
	예치금	173,621	178,408	· 이월금

나.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 2017년도 감채기금은 당초 3,098억 1백만원의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한 차례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7,227억 1백만원 으로 변경해 시행하였음.
- 이는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지방세 세입 증가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해 법정 정산 금을 제외한 50%에 해당하는 4,129억원을 감채기금에 추가로 적립한

것이 주된 사유임.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2)에 따라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채기금 적립기준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의무지출 경비를 제외한 8,259억원의 50%를 감채기금에 적립한 것임.
- 시는 감채기금의 재무활동 예산 항목이 당초의 3,098억원에서 7,227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지난 해 7월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해 의결받았음.
- 추가로 적립된 순세계잉여금 4,129억원 가운데 2,400억원은 도시철고 공채 상환지원을 위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로 추가 진출했으며, 1,729억원은 예치해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할 계획임.

2)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진출금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2017년도 서울시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채무잔액		증감액(B-A)
	'16년말(A)	'17년말(B)	
총 계	34,770	37,451	2,681
일반회계	5,200	5,200	-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모집공채)	3,000	3,000	-
양공사 건설채무 이관분(도시철도 공채)	2,200	2,200	-
기타 특별회계	29,570	32,251	2,681
하수도 사업	95	45	△50
하수관거정비 등	95	45	△50
주택사업	8,243	8,989	746
공공임대주택(주택도시기금)	8,243	8,989	746
지하철 9호선 건립 등	21,232	23,217	1,985
지하철 건립(도시철도 공채)	20,532	19,917	△615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안전(모집공채)	-	2,600	2,600
지하철 9호선 연장 및 신림선 등(금융채)	700	700	-

- 채무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 규모의 적정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세입여건의 불안정 상황에 따라 시민안전과 복리후생 등
 재정지출 요인과 순세계잉여금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합리적인 배분 기준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임.

- 한편, 2017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서울시 채무현황은 3조 7,451억 원으로 전년도말 3조 4,770억원 대비 2,681억원이 증가하였음.
-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와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안전관리에 따른 것으로 전년대비 각각 746억원과 2,600억원이 증가하였음.
- 최근 시 채무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와 금융차입금 등을 포함한 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서의 채무 증가가 시 전체 채무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 단기성 자금에 따른 상대적 고금리 부담이 있는 단기성 은행차입금에 대한 관리를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등 지방채 부담이 시 채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근 제한적이지만 세수 증가 등의 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미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남북교류협력기금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통해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된 이후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조성되며, 남북 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지원 타당성 심의를 거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1) 기금현황

- 2017년도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액은 175억 4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91억 7천 1백만원에서 16억 2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 + (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남북교류협력기금	19,171,141	△1,629,463	317,343	1,946,807	17,541,678

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 입	합 계	11,680	11,663	
	예탁금 상환금	3,341	3,341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186	186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48	149	· 시금고 예치금 운용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8,005	8,005	· 전년도 이월금 수입
지 출	합 계	11,680	11,663	
	비용자성사업비	5,819	1,907	· 남북교류협력사업, 사고이월
	기본경비	80	39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경비
	예탁금	3,000	3,000	· 재정투융자기금 신규 예탁
	예치금	2,781	6,717	· 지출잔액으로 시금고 예치

- 수입은 116억 6천 3백만원이며,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3억 4천 1백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천 8백만원, 이자수입 1억 4천 9백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80억 5백만원 등임.
- 지출 상세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신규 예탁금 30억원, 예치금 67억 1천 7백만원, 고유사업비 19억 7백만원 등임.

나.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 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분위기 조성을 통해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교류사업과 인도적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4년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10년 5월 시행된 5.24 대북 조치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대북교류 지원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활발한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2017년에는 이에 따라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에 1억 4천 3백 만원을 지원하는 등 학술회의와 민간단체 지원 중심의 13개 협력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등에 따라 당초 수립한 55 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19억 7백만원(34.7%)을 지출하였음.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추진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비 고
남 북 교 류 협 력 사 업	5,500	1,907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319) - 평화로 2017 전시부스 행사 참여(32) -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 지원(75) -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143)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150) -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57) -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지원(151) - 금강산관광 재개촉구 자전거대행진 지원(20) - 통일경제 실현을 위한 청년실업 해소방안 토론회 지원(13)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234) - 2017 통일테마전 지원(197) - 평화·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16)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지원(500)
기 본 경 비	80	39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당, 속기로 등 운영경비

- 특히, 시는 여러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각종 학술대회와 민간단체 지원 등 다양하고 의미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됨.
- 다만, 제한된 조건하에서 실질적인 남북교류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각종 학술대회 지원이나 용역수행, 행사성 경비 지출 등은 일반회계 사업으로도 충분히 수행가능한 것으로 기금 설치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 특히, 예산측면에서 보면 현재 기금 사업비가 남북관계나 북측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의 성사 여부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특성에 따라 매년 사업비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형식으로 포괄비로 편성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지난 해 모두 4차례의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세 차례 민간경상사업비 감액과 행사운영비 신설, 사무관리비 증액 등의 항목간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졌음.
- 또한,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017년에는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2017 통일테마전 지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지원 등을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추진하였음.
-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다시 남북교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아울러, 현재 별다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7년 정도 지속되면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과 시금고 예치로 구분된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자수입 극대화과 자금 운용합리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음.
-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서울시내 자치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함.

1) 기금현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2017년말 조성액은 56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8억 9백만원보다 8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 + (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4,808,944	828,720	2,619,919	1,791,199	5,637,664

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 입	합 계	7,408	7,428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99	119	·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예 치 금 회 수	4,809	4,809	·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지출잔액
	일반회계전입금	2,500	2,500	· 일반회계 전입금
지 출	합 계	7,408	7,428	
	비용자성사업비	2,023	1,789	·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등 6개 사업
	기 본 경 비	3	3	· 대외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경비
	예 치 금	5,382	5,637	· 지출잔액으로 시금고 예치(사고이월포함)

- 수입은 총 74억 2천 8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48억 9백만원,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25억원, 예금 이자수입 1억 1천 9백만원 등임.
- 지출 상세내역은 고유사업비 17억 8천 8백만원, 시금고 예치금 56억 3천 7백만원, 기본경비 3백만원 등임.

나.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 2017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에서는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18억 7천 5백만원을 당초에 편성하였으며, 계획변경을 거쳐 20억 2천 3백만원을 확정하였음.
- 이후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사업을 포함한 6개 고유목적 사업에 17억 8천 9백만원을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3천 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이에 따라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최종 사업예산 집행률은 전체 고유목적 사업비의 88.4%임.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출액	집행내용
소 계	1,789	

사 업 명	지출액	집행내용
1.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5개 지자체(인천,강원,대구,경북,전남)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추진 - K-트래블버스 운영 : 총167회 1,881명 이용 -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운영, 다국어브로셔제작배포(10만2천부), 팸투어(총20회, 335명 참가), 사업설명회
2.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와 연계한 외국청소년 대상 서울역사 탐방 - 기 간 : 1.15~1.16(1박2일) - 장 소 : 시민청 및 고궁, 문화시설 등 - 참여인원 : 290명(40개국)
3.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3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초·중등학생 역사문화교류 사업운영 - 17개시도 : 경북, 전남, 전북, 충남, 강원, 고령, 고창, 거창, 삼척, 영암, 원주, 정읍, 진안, 진주, 제주, 철원, 수원 - 지역-청소년간 교류 2,500명 · 서울→지역 1,020명, 지역→서울 1,190명, 지역특성화 290명
4.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8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지원 : 3억원 - 여수 수산시장 화재피해 지원 : 5천만원 -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 장갑, 수건 등 5천개 - 강원, 충남 가뭄피해지역 지원 : 아리수 4만9천병 - 충북 수해피해지역 지원 : 아리수 1민병, 수해복구 자원봉사인력 파견(총2회, 460명) - 포항 지진 피해지역 지원 : 이재민구호물품 650개, 피해복구비 5억원
5. 지역상생 네트워크 활성화	4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약체결 자치단체 간 사업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등 공유 - 지역상생사업 언론매체 홍보추진 : 총 44회 · 서로월장 서로살림,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홍보 - 지역상생 포럼 및 민관협력세미나 : 2017.11.3 · 포럼 : 대회의실, 31개 지자체 및 지역활동가 등 160명 참여 · 세미나 : 소회의실, 지역활동가 및 공무원 30명 참여 - 지역상생박람회 · 2017.11.4~11.5/무교로 보행전용거리 · 23개 지역 30개 단체 참여, 40개부스 운영, 매출액 52백만원 - 서울정책연수 : 2017.5월 ~ 12월(8개월) · 12가지 주제별 혁신정책현장 투어(모듈형) · 총 135회 3,613명 연수 참여 (시민 3,245 / 공무원 332 / 의원 36)
6.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 체험지역 : 경기도 양평·가평 (MOU체결 지자체) - 6.10~6.11.(1회), 9.23~9.24.(2·3회) - 총118명 참여(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단위)

- 2017년에는 특히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여수 수산시장 화재를 포함해 모두 6차례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와 재난 구호지원을 위해 당초 편성된 10억원의 예산 가운데 8억 7천 6백만원을 예산을 지원하였음.
- 다만, 이 과정에서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관련 지원금을 직접 입금처리하기 위해 구호지원 사업의 예산통계목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당초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음.
- 당초부터 해당 사업비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난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편성하였고 2016년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예산항목을 적합하게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로 판단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제외한 별다른 기금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중인 기금가운데 기금의 수입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

- 이 기준에 따르면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재해·재난 기금으로서의 역할에 따라 기금의 완전한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기금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계정 통합을 포함한 다각적인 차원의 기금 운용 합리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5.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대외협력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 설치하였음.
-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 계정)은 외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교류협력 증진 사업경비로 지원함.

1) 기금현황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2017년말 조성액은 28억 8천 2백

만원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27억 2천 4백만원에 비해 1억 5천 8백 만원이 증가하였음.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A) + (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723,892	158,195	2,072,573	1,914,378	2,882,087

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

-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 수입은 총 47억 9천 6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22억 1천 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억 1천 2백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5백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6천 7백만원 등임.
 - 지출 상세내역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을 비롯한 9개 고유사업비 19억 1천 4백만원, 시금고 예치금 28억 8천 2백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경비 등임.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명세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최종계획	결산금액	주요내역
수 입	합 계	3,565	4,796	
	공공예금이자수입	18	67	·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1,026	2,212	· 전년도 이월금 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512	512	· 재정투융자금 상환액
	예탁금이자수입	9	5	· 재정투융자금 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2,000	2,000	
지 출	합 계	3,756	4,796	
	목적사업비	2,737	1,914	· 개도국 자매도시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 등 총 9개 목적사업비 집행
	기본경비	5	0.5	·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경비
	예치금	823	2,882	· 지출잔액으로 시금고 예치

나.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에서는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을 비롯해 모두 9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당초 27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19억 1천 4백만원을 최종적으로 집행하였음.
- 9개 고유목적 사업비의 집행율은 편성액 대비 69.9%에 불과하며, 특히, 전년도에도 고유목적 사업비의 당초 계획대비 집행률이 60%미만에 그친 바 있음.

2017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내용
소 계	2,737	1,914	
1. 개도국 자매도시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	690	6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국 17개도시, 20명의 개도국공무원 참여 • 예비과정, 기초·전공과정 및 비교과활동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498	3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도시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 과정 25개국 58개도시 174명 • 메트로폴리스 지역분원 현지워크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카이로 분원 공무원 25명 • 2017 국제연수정책포럼 개최(11월)
3.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	69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상반기 초청연수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국 6명(필리핀 1, 알제리2, 말레이시아3) - '17.5.17~5.24(7박8일) • 2017년 하반기 초청연수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국 10명(베트남5, 키르기스스탄2, 알제리23) - '17.10.18~10.25(7박8일)
4.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 터"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2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2 데스크톱 컴퓨터 외 5품목 지원 (울란바타르시 요청)
5.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4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 의료기관 지원인 초청연수 8명, 인도네시아 초청연수 1명
6.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779	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메르세드 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 메르세드 송수관로 개량(HDPE관 D=12", L=500m) • 산라몬 정수장 송수관로 부설(HDPE관 D=12", L=1,500m)
7.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90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도시 불용 소방차량 양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국 10대 • 초청 교육훈련 실시/3개국 19명 • 재난 피해 도시 불용장비 양여(페루)
8.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 화 컨설팅 지원	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반둥시 세무정보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한 2017년 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내용
9.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500	57	• 멕시코시티 지진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 2017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의 고유목적 사업 가운데 멕시코 지진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사업의 경우 2016년도에도 동일하게 진행된 연속사업임.
- 이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두 차례 개최되는데 불과했으며, 중요한 사업변경이 없다는 판단에 의해 두 차례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음.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중인 기금을 대상으로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활용하고 있음.
- 위원회 운영 적정성 항목에는 연간 2회 이상의 소집회의 개최와 소집 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난 해 평가에서 시의 기금관리 위원회 운영 적정성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경쟁우위에 있지 않음³⁾.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가 운영

3) 20점 만점에 서울시는 15.86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 6위에 해당됨.

하는 각종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위원선임과 소집회의 개최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상대 외국 지방정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최초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상대방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아울러,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외에 특별한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연간 1~2억원 규모의 이자수입이 사실상의 유일한 수입구조인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대비해 일반회계 출연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과 함께 사업의 조정이나 일부 사업의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기금의 설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의 통합이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지역개발기금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임.

- 2017년 총 수입은 57억 2천 8백만원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인 기타수입이 56억 4천 1백만원, 이자수입이 8천 7백만원임.
- 지출액은 57억 2천 8백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49억원, 회계 감사 등에 소요되는 기금관리비 3백만원이며, 8억 2천 5백만원은 예치되었음.
- 지역개발기금은 과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관리되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기금방식으로 운용방식이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년에는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56억 4천 1백만원이 전입되었음.
-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용도에 맞는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어 당분간 지역개발사업의 예비적 용도로 자금을 관리하는 선에서 운용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적절한 운용수익 확보를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예탁과 시금고 예치 등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